

「THE NET」의 경고

김기중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는 '정보화사회'라는 화두를 불들고 열병을 앓고 있다. 정부, 기업, 언론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까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희오리권 내로 진입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탈락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거스르는 어떠한 논의가 있지도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경쟁 논리만이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를 향한 거대한 물결을 거부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해도 너무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멀칠 수 없다. 몇몇 미래학자들이 그리는 꿈의 사회가 반드시 도래할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회가 반드시 꿈의 사회도 아니라면, 그렇게 컴퓨터로 조직화된 사회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새로운 권력 집단이 창출되는 문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개별화, 과편화되는 문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지배의 우려는 없는지 등등. 특히 우리 사회같이 권력부분의 민주화가 덜 된 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기업 그리고 언론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사업에 국민이 배제됨으로 인하여 오는 폐해를 부단히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필요성은 긴급하고 긴

요하다.

이런 점에서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비공개>로 잘 알려진 어원 왕클러가 감독하고 산드라 블록이 주연한 영화 「네트(THE NET)」는 컴퓨터 지배 사회의 실상을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는 주목할 만한 영화다. 이 영화는 작가가 상상하는 미래 사회를 그런 '믿거나 말거나'의 'SF영화' 계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빛난다. 물론 이른바 SF계열의 작품들이 과학 문명이나 컴퓨터 문명의 암울한 미래를 형상화함으로써 과학 문명의 부정적 발전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르 중의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트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전제로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실적이고 흥미진진하게 그렸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목전에 둔 우리 현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고기는 씹어야 맛을 안다고, 영화도 '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영화에 드러나는 여러 사례가 곧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례만을 보자.

먼저 이 영화는 먼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영화에 나타나는 모든 기술적 사항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가상적으로 설정한 범죄자의 몇 가지 행위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몇몇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우리의 주인공 베넷 안젤라(산드라 블록)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베타 테스터(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시험판을 미리 사용하여 보고 수정을 제안하고 오류를 지적하여 주는 것) 일을 하거나 고장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고쳐 주는 일을 하며 지내는 컴퓨터왕이다. 여러 대의 컴퓨터와 더불어 사는 그녀는 집밖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다. 어느 날 자신이 거래하던 회사로부터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검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크을 받는다. 그런데 이 디스크이 미국 전역에 깔린 컴퓨터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는 범죄 집단의 음모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범죄자들에게 쫓기고 우리 주인공은 탁월한 기지로 범죄자들을 허당치게 하고는 결국 이들을 지옥과 감옥으로 보낸다는 전형적인 헐리웃 영화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 영화의 강점은 그 사실성에 있다. 몇 가지 흥미있는 장면을 보자. 베넷은 밤늦게 자신의 집에서 '근무'를 마치고, '피자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자를 시켜 먹는다. 또한 베넷은 거주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집 주인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조차 만난 일이 없는데(베타 테스터일을 주는 회사와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직접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있기는 하다. 범죄자들은 미남 컴퓨터 전문가인 책을 베넷에게 접근하도록 하여 문제의 디스크를 뱋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경찰청 컴퓨터를 조작하여 루쓰 맥스라는 여자 범죄자의 경력과 베넷의 경력을 바꿔치기 하여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베넷은 경찰로부터 쫓기게 된다). 베넷이 머물던 호텔의 컴퓨터에 침투하여 베넷이 체크아웃한 것으로 기록을 바꾸어 버려 베넷이 호텔에 머물 수 없도록 하며, 베넷을 도와주던 남자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 컴퓨터 기록을 심장병 환자에

서 당뇨병 환자로 바꾸어 놓아 심장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이 투여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사망이 당뇨병 환자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컴퓨터 기록을 보여주는 병원직원앞에서 베넷은 컴퓨터를 부수어 버린다. 또한 부동산업자의 컴퓨터에도 침투하여 베넷이 거주하던 집을 팔아 버리도록 한다(베넷은 돌아갈 집과 자신을 방어 할 중요한 무기인 컴퓨터마저 빼앗긴다). 한편, 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베넷의 신상정보(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족관계, 주소, 하는 일 등)를 빼내 베넷에게 접근하는데 이용한다.

범죄자 집단은 자신들이 개발한 보안프로그램인 '게이트 키퍼'를 판매하기 위하여 공항 컴퓨터를 마비시키기도 하고(공항당국은 이 사건 후 게이트 키퍼를 보안 프로그램으로 채택한다), 게이트 키퍼 프로그램을 사용한 곳을 제외한 은행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기도 한다(몇몇 은행이 게이트 키퍼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일은 민간부분이든 공공부분이든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물론 예외가 아니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찰에 붙잡힌 베넷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외친다. 사회의 모든 것이 컴퓨터 안에 들어 있다고. 신상기록, 병원기록, 범죄기록, 주택정보, 신용카드,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까지. 컴퓨터에 없으면 실제로도 없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외친다. 체크아웃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는 베넷에게 호텔 종업원은 '컴퓨터에는 체크아웃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는 그 이상을 알지 못한다'고 베넷을 배척한다. 부동산을 내 놓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는 베넷에게 부동산업자는 비싼 컴퓨터로 몇 번을 확인하여 보았는데, 베넷 안젤라가 집을 내 놓겠다고 의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베넷의 주장을 무살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컴퓨터로 기록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이 조작되어 실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주의하게 기록이 바뀌어 어떤 개인에게는 들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테리 길리엄의 명작 〈브라질〉(1985년작, 국내출시명 '여인의 음모')은 범죄 기록부를 출력하던 프린터에 죽은 파리가 떨어져, 기록부중 한 사람의 이름중 첫자의 'B'가 'P'로 바뀌게 되고, P모씨는 보안부로 끌려가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미래 조직사회의 얘기이다. 관료사회와 컴퓨터의 결합에 의한 통제 시스템의 가능성은 더이상 가능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도 전 분야에 걸쳐 컴퓨터 기록이 부분별하게 도입되고 있고, 아무런 통제없이 컴퓨터간 상호연결이 추진되고 있다. 범죄기록, 사회보장기록, 세무기록, 부동산기록, 주민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교환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민간기관의 신상정보 또는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까지 발생

하고 있다(최근 종합전산망을 구축한 각 은행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세무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불량거래자로 등록하여 금융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네트의 경고」는 미래의 일도, 우려의 문제도 아니다. 개인이 누군가로부터 항상 추적당할 수 있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이니 '신체의 자유'니 '소수자 보호'니 하는 것들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제 컴퓨터 기록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는, 한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는, 미래가 꼭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정보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컴퓨터 기록에 남기는 것 자체를 통제하여 일정한 사항 외에는 컴퓨터 기록에 남기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가 보유하는 컴퓨터 기록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 기록에 접근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컴퓨터간 상호 연결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인권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전 분야에 걸쳐 컴퓨터 기록이 부분별하게 도입되고 있고, 아무런 통제없이 컴퓨터간 상호연결이 추진되고 있다. 범죄기록, 사회보장기록, 세무기록, 부동산기록, 주민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교환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민간기관의 신상정보 또는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까지 발생

추천인 제도

김도형

1. 대상사건

수원지방법원 96 가합 제2692호 분회장 및 대의원 선거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윤승현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버스지부 안양

교통분회

2.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분회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안양교통 소속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서울버스 지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분회원 총수는 196명이고 분회장은 손형일이라는 사람이다.

원고는 1996. 1. 11. 실시될 피고분회의 제12대 분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1995. 11. 경부터 피고분회의 규약에 정한 대로 55명의 추천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회원들을 만나서 자신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분회의 분회장은 역시 손형일로서 위 손형일은 15년 이상 분회장직을 독

점해왔다. 위 손형일은 분회장 직을 독점해 오는 동안 노동조합을 사실상 자신의 사유물과 비슷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았다. 즉, 그 기간에 걸쳐서 노동조합 조직을 자신의 지지자들로만 구성하고 공식적인 노동조합 조직만을 자신의 지지자로 구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별도의 사조직적인 성격을 띠는 11개의 친목계를 조직하여 자신의 적극 지지자들로 하여금 친목계의 회장을 맡게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장악력을 공고히해왔다. 예를 들면 새로 입사하는 조합원에게 특정 친목계를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버스배차시 낡은 차를 배차하는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대개의 조합원들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원고는 이러한 위 노동조합의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의 12대 분회장선거에 출마하여 피고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을 막고 회사에 대한 노조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결심하였던 바. 선거 얼마 전까지 조합원 중 48명 정도의 추천인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위 손형일은 원고가 분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추천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친목계 등을 통해

원고의 추천인들에게 적,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 원고의 위원장 입후보 자체를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원고를 추천했던 추천인들이 대거 추천을 취소하게 되었고 원고는 추천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위 분회의 분회장선거에 출마조차해보지 못하고 분회장 선거에 위 손형일이 단독출마하여 12대 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피고분회의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규약상 조합원 60명의 추천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의원 선거도 분회장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고 결국 위 손형일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출마하여 위 대의원단 전체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 위 대의원들 전체가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위와 같이 불합리한 추천인 규정으로 말미암아 분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해보지 못한 원고는 선거직후에 추천인 규정의 불합리성과 위 손형일의 추천인 확보 방해 행위를 문제삼아 분회장선거 및 대의원선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손형일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신청하였다.

3. 법률상쟁점(선거입후보시 과다추천인 요건의 효력유무)

가. 원고측 주장

원고는 위 분회장선거가 위법하다는 근거로서 분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55명의 추천을 요하도록 하고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추천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피고분회 선거관리규정 제17조가 노동조합법 제22조 및 제19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약에 근거하여 치러진 위 선거는 무효이며, 피고의 추천인확보방해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 노동조합법 제22조 및 제19조의 기본 취지와 피고분회 추천인 규정의 위법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는 단결체로서 조직의 성격상 사용자에 대한 자주성 확보가 그 핵심적인 관건인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화가 그 필수적인 전제가 되므로 노동조합의 민주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노동조합법의 제반 강행규정에 위배한 노동조합 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조합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 건과 같이 조합원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피고분회의 경우 재적 조합원이 196명인 사정 하에서 분회장의 경우는 추천인 55명(재적 조합원의 28%), 대의원의 경우는 60명(재적 조합원의 30%)을 각 요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조합활동에의 균등참여권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규정이다.

2) 위 손형일의 추천인 확보방해행위의 위법성

15년간 분회장직을 독점해 온 위 손형일은 노동조합임원을 자신의 지지자들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조직인 11개의 친목계 회장 등을 자신의 지지자로 구성하여 자신의 조직으로 관리하면서 이 건과 같은 분회장선거시 지나치게 많은 추천인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타인을 추천해 주지 못하도록 직,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후보자의 출현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으로 자신

이 단독출마하여 당선되는 수법을 써왔고 이러한 수법은 이건 분회장 선거와 대의원선거에서도 그대로 행사된 것이다. (위 손형일이 위와 같은 추천인확보 방해행위를 했다는 점은 위와 같이 과다한 추천인을 요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선거관리규정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대의원선거의 위법성

분회장선거의 위법성은 그대로 대의원선거의 위법성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규약에 의하면 대의원선거는 개별대의원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은 후보자가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대의원 선거는 후보자 20명이 한꺼번에 입후보하고 위와 같이 입후보한 후보에 대하여 분회원이 일괄적으로 찬반을 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피고분회 스스로가 정한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선거이다.

나. 피고측 주장

피고는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론적인 근거를 대면서 반박하지는 않고 이 건 분회장선거가 피고분회의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 제정, 개정됨)에 의해서 실시된 선거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규약과 선거관리규정하에서 치루어졌던 친전의 제11대 분회장 선거도 조합원이었던 소의 김성환이 추천인을 확보하여 위 손형일과 경선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재판진행과정

사건이 진행되면서 원고측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친목계를 통한 추천인확보방해행위를 드러내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분회에서 분회장과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추천인 수를 선거 직전에 변경시켜 온 사실도 지적하는 등 어느 정도 추천인 요건이 지나치다는 점을 드러내는데 성공했다고 판단되었다. 원고 측에서 피고 측의 심한 추천인 확보방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은 위와 같은 추천인 규정이 일반적으로도 지나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와 같은 규정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추천인 확보방해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추천인 규정이 조합원의 조합활동의 자율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과거의 판례와 이웃 일본의 판례도 동원하였다. 우리나라 판례로는 '노동조합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에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전체조합원수(310명)의 1할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과 조합원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992. 3. 31. 91 다 14413 노조 위원장 선거 무효확인)고 하여 전체 인원의 1할에 약간 못 미치는 추천인을 요하는 규정 하에서 치루어진 선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고등법원 판례 중에는 대의원 입후보 요건으로 지나치게 많은 추천인을 요하도록 한 규정(전체 조합원 310 명, 추천인 요건 60

명) 하에서 치루어진 대의원선거는 무효라는 결정(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1991. 1. 10. 선고, 90 라 96 대의원대회결의 효력 및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이 있었을 뿐이며, 일본 판례로는 조합 임원에 입후보한 자가 각 지부별로 10명 이상의 추천을 얻는 것 및 전 임파견임원에 입후보한 자가 중앙위원회의 추천을 얻는 것을 요함을 정한 선거규정은 무효로서, 이러한 선거규정에 기초하여 조합임원선거의 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大阪地裁 소화56년 제2702호, 노동조합임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소화 56. 7. 9. 제1 민사부 결정) 위 판례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조합임원선거시 어느 정도 수준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 이에 근거해서 치루어진 선거는 유효하나 지나치게 많은 추천인 요건에 근거해서 선거가 치루어진 경우는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하에서 치루어진 선거가 명백히 무효라고 선언한 판례는 없었으므로 위 판례들의 취지를 드러내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것은 분회장 선거 직전에 치루어진 10대분회장 선거에서 경선이 이루어진 것은 소외 김성환이 추천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무인에 추천인 명단을 새겨서 가지고 있다가 후보자 등록 공고와 동시에 위 고무인을 찍어 先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겨우 접수하여 경선이 실시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선이 실시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주장 입증하고 난 후에 판결선고 및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화해를 해 버리고 말았다. 즉 피고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질 경우에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임은 명백했고 원고 측은 이 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자신이 분회장에 당선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 했다는 사정이 작용하여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화해 해 버리고 만 것이었다. 결국 이 건 분회장 및 대의원 선거의 유효성은 인정하는 대신에 위 손형일은 다음

번 인 13대 분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화해가 이루어졌다.

5. 결 론

재판과정 중 피고분회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분회가 피고분회와 비슷한 선거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나는 위와 같이 잘못된 선거관리규정을 통하여 일부 어용 조합이 기득권을 독차지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삼도록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받기로 회망하고 가능하다면 대법원에 상고될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 그런데 당사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재판상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만약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면 선거 무효의 판결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할 뜻이었음을 내비추었다.

이상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그 과정을 너무 장황하게 소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런 헛수고를 한 내역을 그 근거까지 대가면서 자세히 소개한 것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길 경우에 이 사건을 담당한 회원 여러분이 우리가 다하지 못한 부분을 완수하기를 바라는 충정에 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고태관 변호사 민변가입 추천의 글

김 병 주

고태관 변호사는 연수원 22기를 수료하였고 저와 동기입니다. 고태관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하던 중 변호사로 개업을 하여 지금은 저와 함께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내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구조활동, 여러 위원회를 통한 빌전적인 법문화 조성등 민변의 여러 활동

에 대하여 공감하여 금번에 민변가입을 원하였습니다. 고태관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로서 상당히 합리적 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민변에 가입하면 대단히 성실히 민변의 제반활동에 참여하여 민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의사를 밝힙니다.

민변에 가입하면서

장 운 영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신참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10개월이 넘어서야 민변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민변의 입장과 활동을 지지하면서도 바쁘다는 평계로 회원가입신청을 늦게 하게 된 것을 여러 선배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면서 쫓기듯이 생활하던 중 언뜻 이러다가 일이나 돈만 쫓는 생활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법원에 가는 길에 어느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노동법개정과 관련하여 민변에서 농성을 하는데 거기에 간다고 하셨는데 그 때 노동법개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고 순간 저 자신도 더 이상 개인적인 생활에만 안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변 사무실에 들르게 되었고, 여러 변호사님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

습니다. 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정 노동법의 문제점을 토론하면서 새삼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만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적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발전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의견이 결집될 때 사회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은 시국이 중요한 국면마다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 선배님들을 만나뵙고 많은 지도편달을 받으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참변호사가 신참변호사의 추천사를?

김 인 희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1년도 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가 우리 모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할까봐 두려우며 감히 다른 변호사들에게 우리 모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지키며 아무런 이유없이 억울하게 당했던 지난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생각의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협보다 자유스러운 공간인 우리 모임 같은 모임으로 모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의 후배인 장운영 변호사에게 우리 모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왔습니다. 사실은 연수원에 다닐 때부터 변호사를 하면 같이 우리 모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왔고 종국적으로 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자 더욱 적극적으로 권유해왔습니다.

장운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의 85학번입니다. 사법연수원은 저와 같이 25기로 마친 후 곧바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였는데 처음으로 입사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리를 떠난 후 지금은 삼정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끈기가 있고 성실한 점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을 아니어

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현재는 미완의 그릇으로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처리할 것임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유독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변호사의 책임감은 자신이 속한 모임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나타나고 항상 모임에서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나타납니다.

장운영 변호사는 일반적인 로펌이 그러하듯이 현재 삼정에서 지나치게 일이 많아 우리 모임에 자주 나오기 어려울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 편집

민변에 들어서며 ...

오승진

군법무관으로 3년동안 근무한 후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되었다.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 다루는 일이 주로 회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에서 고문회사를 대리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었다. 분에 넘치게 큰 사건을 맡아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해서 기뻐한 적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끔씩 '과연 내가 보람있고 내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곤 하였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지역주민들이 기업에 대하여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할 때 회사측을 위하여 일을 할 때는 이러한 것을 더욱 심하게 느꼈다. 망설임 끝에 아내를 설득하여 고향으로 내려와 개업했다.

한때 문민정부가 수립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민주화 운동이 의미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 여당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사태를 겪으면서 환상을 깨닫게 되었다. 한보사태는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권력의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의혹이 깨끗하게 밝혀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문민정부는 겹테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이번 한 번만 분노를 느끼고 다시 잊어버린

... 푸아송 페어리

성명서 및 자료

편집자 주 : 여기에 소개된 자료는 학술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시민연대의 공동주최로 1996년 12월 14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이다. 소개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날 행사의 1부 주제발표에서 발제된 것이 '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한택근, 민변)이고, 2부 종합토론에서 기조발제된 것이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이다.

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한택근

I. 서론

1993. 2. 25 김영삼 정부(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따른 폐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과는 전혀 반대였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이는 이전에 비하여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김영삼 정부의 본질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양상을 떠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에 의한 인신구속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 바 점차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문민정부 발족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된 공안당국의 자리보전을 위한 남용의 경향마저 띠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경찰은 조국교수등 10명이 1990년 8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특히 조교수는 국가보안법연구 등 진보적인 법학연구를 해오던 이로서 사노맹 총책(백태웅)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과,『우리사상』1호 발간에 잠시 기획자문을 해주었다는 사실, 사과원에서 그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관련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구속한 것이었다.

한편 경찰은 8. 11 조국 교수등 7명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일부에 대하여 반국가단체구성·가입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적단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1~7월)
구속자 수	305	122	367	246	201

(96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104쪽)

이하 소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국가보안법 남용사례를 연도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II. 연도별 남용사례

1. 1993년의 사례

소위 문민정부 출범 후 상반기에는 이전에 비하여

체구성·가입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기소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하였다.

노태훈씨 사건

검찰은 1993. 8. 11.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 상근간사인 노태훈씨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소지 혐의로 기소하였다. 노씨는 일본에서 열린 '한국양심수 서화전'에 관여하였는데 처음 경찰에서는 노씨를 조총련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연행, 조사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의가 밝혀지지 않자 노씨가 장기수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라는 책자 및 장기수 김도한씨가 지은 시조집 「옥중일월」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3. 10. 20.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소지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러한 행태는 이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컴퓨터 통신에 대한 탄압

1993. 11. 18. 대검 공안부는 데이콤의 컴퓨터통신망 '천리안'에 게재된 '현대철학동호회'의 일부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수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서울경찰청은 12. 8. 위 동호회 회장 김형렬씨를 구속하였다.

한편 서울형사지방법원 9단독(재판장 유우열판사)은 1994. 5. 10. '피고인 김형렬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게재한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용해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인정하였다.

이후 공안당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컴퓨터 통신에 대한 검열 및 인신구속을 자행해 오고 있다. (다만 서

울지방법원 항소 5부는 1995. 5. 17.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공산당선언'을 일부 게재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진상호씨에 대하여 "공산당선언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이나 일반서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타 조직사건

- 12. 7.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건 : 7명 구속
- 12. 17.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재건기도 사건 : 민중정치연합회원 8명 구속

2. 1994년의 사례

- 1)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에는 상반기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신구속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출판사 탄압

1994년 한 해동안 출판사 탄압이 부쩍 늘었다. 구속된 출판인 수가 1991년 3명, 1992년 1명, 1993년 3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8월까지 도합 8명이 구속되었다.(경찰청, 94년 국감자료)

다음 표의 책들은 대부분 3~7년전에 출간된 책들로서 이전 군사정권에서도 구속에 이르는 문제로 까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문민정부에서 새삼스레 문제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출판인들을 구속하면서 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군사정권시절인 1989년에 작성된 '대검분석 이적도서목록'이었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용인기를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당국의 이러한 출판인 구속조치에 대하여 국제펜클럽 산하 옥중문인위원회는

출판사	출판인	구속일	서적
일빛출판사	대표 이성우	1994.3.19.	'강의 노동자의 경제학'(1990.5.), '강의 노동자의 철학'(1990.8.) 등 5권,
힘출판사	대표 김연인	1994.3.23.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1990.10.), '90년대 도약 청년학생운동'(1990.3.) 등 7권,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1994.4.20.	'용해공들'(북한소설)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	1994.6.10.	레닌의 '체국주의론' (1987.12) 등 4권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	1994.8.20.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회고록)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연현	1994.8.30.	'벗'(북한소설)

1994.4.19.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출판 인들의 구속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한겨레신문, 1994. 4. 25.)

한편 북한소설『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항소부)은 1995. 4. 21. 소설『용해공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이 소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위협할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도 들어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폐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서울지방법원 94노 4599) 위와 같은 인신구속이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위 책자들 중『세기와 더불어』를 판매한 혐의로 긴급구속된 인서점 대표 심범섭씨에 대하여는 법원이 1995. 7. 21. 과 7. 25.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다.

회망새, 노민문연 사건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예술활동의 영역에서도 자행

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1994. 2. 21 밤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극단 회망새 대표 김태일씨 등 3인을 연행하였다. 당시 경찰은 회망새가 1994년 전국순회 공연 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대부분이 북한을 찬양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후 경찰은 3. 24, 17:30경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회망새의 단원 등 6명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6. 15.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회망새의 단원 허명순, 안성혜, 최경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율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6. 29. "김씨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가요등을 소개하려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회망새 대표 김태일에게 징역 2년, 단원 이윤정에게 징역 1년 26월, 단원 조재현, 이창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경찰청은 9. 27. 새벽노동자민족문화 운동연합(노민문연) 단원 8명을 연행하였다. 노민문연은 구로, 중부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공개 문화 단체로 문화학교, 풍물,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구속된 자들 중 이철우씨 등은 이미 2년전에 활동을 그만 둔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구속자 및 가족들은 정부가 공안당국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한편 1994. 7. 8. 김일성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후 사회 일각에서는 김주석에 대한 조문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영의원은 7. 11. 개최된 임시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이 앞으로 한반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바탕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와 "북한 권력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의 양해가 성립된다면"이라는 두 가지 전제 아래 "우리쪽에서 조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뜻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마치 조문론=추모론이라는 등식과 함께 조문론자들을 김주석 흠토론자들인 양 간주하며 여권 및 보수파들과 함께 소모적인 사상논쟁을 부채질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조문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은 7. 18. 난데 없이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과 사로청이 있고,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며 학생들을 매도하자, 각 언론들은 마치 숨겨진 진실이라도 폭로된 양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주사파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온 시점에서 김일성 사망이후 애도문제를 둘러싸고 박총장발언이 나온 것은 시대적 요구의 한 표현"(동아일보 1994. 7. 22. 사설)이라고 하는 등 이를 치켜세우기에 나섰고, 이러한 보도들은 이를 빌미로 정부가 학생 및 재야단체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결과를 냈았으며, 이후 메카시즘 선풍, 마녀사냥 등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신공안정국이 형성되었다.

조문관련 구속

7. 16. 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강재우 목사와 간사 안희만씨가 김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으로 항하던 중 경기도 고양시에서 체포되어 구

속되었다. 한편 전창일, 이종린 부장, 강순정 서울시연합 부장 등은 단순히 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다가 함께 구속되었다.

7. 18.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교정에 "김주석의 사망을 민족화합의 대의에서 애도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부장장 최인규가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구속되었다.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7. 27. 진주시 우리서점 대표 정대인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고 아울러 당시 연행과정에서 경상대학교 교양과정 교재로 사용되던『한국사회의 이해』13권이 압수되면서 소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비록 정대인씨는 다음날 바로 석방되었지만, 며칠후인 8. 2 최환 대검공안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익명을 요구하며 대학교양교재의 내사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라디오 및 TV가 이를 보도하고, 다음날인 8. 3 일간신문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여름 신공안정국은 그 절정에 달하였다. 당시 공안당국의 설명은 경상대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9명이 1990년 집필하여 4년간 대학교양교재로 사용되어 오던『한국사회의 이해』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고, 이후 공안당국은 이들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도하면서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 회의,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개 단체는 같은날 9일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같은 공안당국의 처사는 학문·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규정짓고 이를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후 위 위원회 및 기타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

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소환 및 구인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동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다가 같은 달 30일 해외체류중인 백좌홍 교수를 제외한 8인의 교수들은 구인에 응하였다. 이후 이들을 구인한 검찰은 같은 날 장상환, 정진상 등 2인의 교수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최태룡, 이해숙, 김준형, 이창호 교수는 불구속 입건하고, 김의동, 송기호 교수는 수사종결하였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담당판사 최인석판사)은 같은 달 31일 검찰의 2인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1. 30. 장상환 교수, 정진상 교수 등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준형, 이해숙, 이창호, 최태룡 교수 및 도서출판 지이대표 임경숙씨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 해외체류중인 백좌홍 교수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이창복씨, 황인성씨 구속사건

서울경찰청은 8. 9, 8.13.부터 8.15까지 열릴 예정인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범민족대회 남측 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씨와 범추본 집행위원장 황인성씨를 긴급구속장에 의하여 구속하였다. (법원으로부터의 구속영장은 연행 후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부받았음) 이후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94. 9. 6.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2. 9. 선고 94고단 6459)

당시 문제로 된 표현물의 내용은 우리정부를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예속정권이라 하였고, 연방제통일방안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해체,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1995. 4. 6. 피고인 이창복

의 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이런 표현행위에 대하여도 관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용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향유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 1995. 4. 6. 판결 95노8)

3. 1995년의 사례

공안당국은 연초부터 6. 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조직사건을 통하여 무더기 구속을 하였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은 구속된 이들이 대개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중지하거나 운동을 정리한 이들로서, 구속 당시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었다. 게다가 이들 사건의 경우 구속 당시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이었다가 대부분 이적표현물소지나 고무찬양혐의로 축소되어 기소되었고, 한 사건에서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가보안법 사건은 공안당국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 속에서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건을 부풀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각종 조직사건

2. 14.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14명 구속
3. 17. 경기대 자주대오 사건 13명 구속
5. 30. 전남대 민족사랑 연합회 사건 3명 구속
-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4명 구속
6. 9. 남한 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사건 15명 구속

10.18.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12명 연행

11.17.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7명 구속

11.21. 진보정치연합 13명 긴급구속

김무용씨 사건

경찰은 1995. 3. 23. 한국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 김무용씨를 과거 빨치산의 활동에 관한 글 등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역사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빨치산 역사기행'이란 자료집에 '빨치산 활동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 글들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였다는 것이다.

부여간첩 김동식사건(불고지죄 사건)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전국이 들끓던 10. 24. 간첩 김동식이 부여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려다 발각되었다는 남파간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 6. 이인영, 우상호, 함운경 등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3인 중 우상호씨는 11. 10.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으나, 나머지 2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 이후 허인희씨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11. 1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허씨는 특정 정당 활동을 하는 이로서 이 사건이 다음해 총선을 의식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놓게 하였다. 한편 허씨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9단독, 재판장 유원석)은 1996. 11. 8. 허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로 검찰은 박씨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이후 선고기일이 1996. 4. 4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4. 11. 선거를 앞두고 박씨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을 염려한 검찰이 재개신청을 하여 재판이 속행되었고, 재판부는 4. 4. 박씨에 대하여 보석 결정을 하였음.)

한편 김태년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위를 거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의 혐의로 연행하였다.

박충렬씨의 경우 구속영장 기재 혐의 사실은 "1989. 일자불상경 … 장소불상 모다방에서 … 성명 불상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 내용불상 교육과 지령을 받고 … 내용불상의 보고를 했다."는 식의 너무 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이후 박씨는 연행된 후 22일 동안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 안제우기(하루 1시간 정도 수면시간 허용), 세워놓기, 무자비한 구타 등의 고문을 받으며 노동당 입당, 간첩활동 사실 및 공작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받았다. 또한 안기부 수사관은 사용하던 무전기를 찾아내면서 관악산, 마석 모란공원, 장소불상의 곳 등으로 3일간 끌고 다니며 추운 날씨에 옷을 벗긴 채 무수한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한편 박씨는 이같은 고문을 끊이기고 "나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박씨는 12. 6.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30일 동안(일요일 제외) 매일 아침부터 밤 11시 넘어서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조사를 했음에도 박씨에 대한 간첩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회합, 통신 혐의를 제외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9단독)은 1996. 7. 12. 박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로 검찰은 박씨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이후 선고기일이 1996. 4. 4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4. 11. 선거를 앞두고 박씨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을 염려한 검찰이 재개신청을 하여 재판이 속행되었고, 재판부는 4. 4. 박씨에 대하여 보석 결정을 하였음.)

한편 김태년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위를 거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범민련 사건

11. 29.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및 각 지방 조직 관련자 29명(의장 강재우목사, 부의장 이천재, 이종련 등)을 연행하였고,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범민련 활동 자료집등을 압수하였다. 안기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91년 11월 국가 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도 계속 북한과 연계해 불순 통일운동을 벌여 왔으며 일부 인물들은 국내 정세를 몰래 수집해 제일 조총련등 북한 공작조직에 전파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단체는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그 동안 6차에 걸친 범민족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해 왔고, 북측본부와 주고받은 모든 통신문을 통해 일원, 동대문경찰서등에 전달해 오는 등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음에도 새삼스레 갑자기 관계자들을 전원 구속한 것은 노태우 비자금사건을 호도하고, 다음과 같이 충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범민련관계자들은 1, 2심 재판과정에서 범민련의 활동은 북한을 이름처럼 목적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범민련의 주장내용은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철폐"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4. 1996년의 사례

1) 4·11. 충선을 앞두고 신년초부터 각종 국가보안법 관련 조직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각종 조직사건

1. 9. 남한조선노동당제전 기도 사건(애국동맹 사건) 7명 긴급구속 … 5명 무혐의 석방(검

찰)

1. 18. 민민학련사건 5명 (모두 현역 군인)
1. 20. 민정련 광주지부사건 5명 구속
2. 4. 사노맹재건사건 10명 연행
2. 25. 노나매기 사건 8명 구속 (현역군인 2명 포함)
3. 28. 사회주의 학생연합 11명 구속 (현역군인 4명 포함)

2) 한편 4·11 충선이후 당국은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이 잇달아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시위 엄단", "좌익세력 척결" 등을 내세우며 공안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후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무차별적 인신구속이 더욱 심하게 행해졌다. 그리하여 4·11. 충선 이후 7.11. 까지 무려 12건의 조직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과거 활동을 문제 삼은 사건들이었다. 예컨대 애국동맹사건(1992), 해방노동자 통일전선사건(1991) 사노맹사건(1992) 학생활동가 조직사건(1992) 등이 그것으로 이들 대부분은 3~4년전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어 조직이 완전 와해된 상태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무려 46명에 달하고, 그 대부분은 직장인, 군인, 가정주부 등이었다. (민가협, 4·11충선 이후 시국관련 급증현상에 관한 보고서, 민변소식지 1996.7.)

각종 조직사건

4. 24~25 800만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12명 구속 (2명 불구속)
5. 8. 전학련사건 13명 연행
5. 29. 나라사랑청년회 3명 연행
5. 30. 사노맹재건기도 5명 연행
6. 7. 범민련사건 2명 연행
6. 18~19 전주대 단기학생동맹 5명 연행
6. 26. 남총련 민족해방군 12명 연행

6. 30. 남총련 자주대오사건 13명 구속 (1명 불구속)

7. 2. 21세기 진보학생연합 12명 연행
7. 6. 애국 크리스챤 청년연합 8명 구속 (5명 불구속)

한총련 사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연세대에서 범민련의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의 통일대축전행사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행사후 연세대에 대한 봉쇄로 인하여 학생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5,899명이 연행되고 그 중 46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행사는 그 동안 6차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으나, 1996년에는 공안당국이 4·11. 충선이후 계속되는 공안탄압 분위기에 편승하여 초강경진압하므로서 사상최대의 구속자를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편 구속된 학생들 중 대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화염병 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당수 학생회 간부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 찬양교무,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회 간부들 중 대부분은 그 혐의내용이 학생회 간부로서 한총련, 서총련 등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이 때에 받은 유인물을 단순히 학생회 사무실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이었다.

진관스님 구속

안기부는 10. 1.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고, 김인서씨등 미전 항장기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하여 범민련 해외대표 김병연

씨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였고, 북한사람으로부터 4,000달러를 받았다면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편 진관스님은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위해 일하던 과정에서 홍보차 전달한 것이지 이적목적에서 행한 것은 아니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진관스님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이 11. 16일에도 불구하고 5일간이나 불법구금을 하였다가 실질적인 석방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6. 3.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의 권리옹호가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된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하겠다.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사건

경찰은 11. 6~7. 23명을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 의 혐의로 연행하였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팩스는 물론 전화기까지 수거해갔다.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11. 11. 남총련 소속 대학생 27명이 이적단체 가입등의 혐의로 대부분 긴급구속장의 제시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특히 이들에 대하여는 가족들의 면회도 거절되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되었다.

한편 검찰은 김영철씨등 5명에 대하여 27일간이나 구속 수사를 한 후에도 민족해방군에 가입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뒤늦게 단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유예하였다.

I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의한 대량구속은 소위 문민정부하에서도 항존하는 일로서, 그 남용의 폐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 남용이 현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둘째, 반정부적인 인사, 진보적인 학자 내지 예술가,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인사, 학생운동가 등에 대하여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으며, 특히 그 폐해는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에 대하여 견제를 하여야 하는 법원 또한 몇몇 예외적인 사례들(예컨대 이창복씨 무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있어서의 영장기각, 박충렬씨 등 무죄)을 제외하면 효과적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세째,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구속 시점이 정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각종 조직사건이 터지고 이에 따른 대량구속사태가 일어난다는 점(예컨대 1995. 6. 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과 1996. 4. 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많은 조직사건이 발생), 정부가

수세국면에 몰렸을 때에 이에 대응하여 각종 공안사건이 터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태우 비자금사건이 터졌을 때 부여간첩사건이 발생하고, 범민련 관련자에 대한 대량구속등이 행해짐) 특히 이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이나, 군복무, 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거행적을 문제삼아 인신구속을 자행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띠고 있다.

네째,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엄존하며,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섯째,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간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반해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경우 경찰 20일, 검찰 30일로 되어 있으며, 대개의 경우 구속만기를 채우고 기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실제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도 구속만기를 채워 기소하는 예가 많음)

여섯째,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조항의 남용이다. 사실 집에 사회과학서적 몇 권 정도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터인데, 일단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소지가 아닌 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하고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그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적표현물 조항을 걸어 피의자를 기소한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1.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상황

① '냉전'의 종식은 (특히 구 소련과 동구의 붕괴 이후) 지구적 규모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초래했다. 미국이 그 존재를 위협하는 현실적 세력의 소멸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오랫동안 미국에 종속하여 "공산주의의 침략을 방위"해 온 반공군사독재정권들은 '용도폐기'되어 민간정부들이 이를 이어받는다. 이런 한에 있어서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와 비판의 자유의 폭이 어느정도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동서간의 상호이해나 화해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 아닌 까닭에 여전히 미국에 의한 세계지배구조와 그것에 대한 (군사적인) 도전이라는 상황은 존재하며 따라서 미국의 군사패권구조나 전략 배치에 변화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냉전의 종식'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국가안보의 법제나 관행이 사라지는 조건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우, 변함없는 분당상황으로 말미암아 '준냉전'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설령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호이해나 화해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테면 '흡수통일'과 같은 형태)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② 희망적인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의 군사적 침략"이라는 현실적 가능성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후퇴하면서 적어도 여러 독재국가들이 국가안보의 법제를 존속시킬 명분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대에서 (그것을 주장하

는 서방국가들의 진짜 의도야 어디에 있든)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아시아 나라들의 개발독재와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정부의 경우 93년부터 95년까지 3년 임기의 UN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된 데 이어 95년에 재선되어 그 임기가 98년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3년동안 UN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고문, 자의적 구금 등에 대하여 국제적 NGO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올해 (96년 제52차) 인권위원회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Abid Hussain씨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규범이나 인권기구들이 그 효율성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주관적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아시아에서의 지역 인권보장기구 및 아시아인권 NGO 회의 (Asian NGO's Congress) 창설논의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답답하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세계의 모든 지역에 창설된 인권보장기구가 인권탄압이 극심한 아시아에만 없다는 사실이 앞으로 이 논의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있다.

③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조건은 상당히 암담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공 말부터 6공기간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폐겼던 국가보안법 존립근거에 대한 회의는 1991년 남북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거의 절정에 이르러 많은 사

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구체적이고도 절박하게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대통령선거 전의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을 거치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은 1994년의 '마녀사냥' 혹은 '신공안정국'을 거치는 총체적 보수화의 흐름 속에서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 나타났듯이) 거의 둘이킬 수 없이 퇴조해버렸던 것이다. 지난 여름의 소위 '한총련사태'는 이 경향에 더 박차를 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9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의 무지막지한 적용이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일반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소극적 내지 냉소적이 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거대 언론매체들의 대대적인 '피해자 매도'가 국민의 의식 속에 깊이 박힌 반공정서를 부채질한 결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호기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기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1980년대 말부터 속속 창립된 대규모 노동, 농민, 환경, 교육, 여성 등등의 제야조직들은 자신의 당면한 과제에 힘을 실으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같은 공통의 과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시민적 쟁점에 힘을 신지 않을 수 없는 거대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1980년대의 소위 민민운동 혹은 반독재운동세력 상당부분이 이들 여러 부문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제도정당)에 흡수되어 운동역량의 분산을 결과한 데다가 민민운동을 자처하는 부문운동마저 거대언론에 길들여진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관심사에 접근해가는 '탈정치화' 경향을 보임으로써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주체는 점점 왜소해지고 고립되어왔다. 일부 시민운동단체 또는 시민운동화한 민민단체들에 국가보안법 남용의 광풍이 불고 거대 언론기관들이 피해자 매도에 극성을 떨 때마다 "동

물이 튀기"를 두려워하면서 몸을 사리는 듯한 경향마저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④ 1988년 하반기에 벌어진 '전·이 구속투쟁'과 '반민주야법 철폐투쟁' 사이의 우선순위논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종의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입장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요즘 상황은 이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청산이나 국보 철폐냐? 을 여름의 '한총련사태'를 거쳐 다시 보수회귀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반국가보안법투쟁은 우리에게 물론 절실하다. 그러나 작년 '5·18투쟁'의 큰 성과를 제대로 된 과거청산작업에 연결시키는 역사적 과제 또한 절실하다. 과거청산투쟁은 아직도 호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보철투쟁(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호기라고 할 수 없다면 국보철투쟁에 총력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결성준비작업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장에서의 약간의 희망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호의적인 조건은 아무데도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인 장에서의 국보철운동이 잘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어느 정도 규모의 성공적인 국보철운동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갑갑하게 만들고 있다.

2. 1990년대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그 반성

여기서 1980년대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언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지금 우리의 국가보안법 철폐전략을 생각하는 데 검토가 필요한 시

기는 1990년대, 특히 1992년 이후의 철폐운동이다.

이 시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조직을 파괴당하는 이른바 '민중·민주계열'의 자구적인 노력으로서 꾸준히 전개된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역시 통일운동과 더불어 융성했다가 탄압 받는 통일운동과 더불어 고립되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의 《국가보안법연구》와 같은 본격적인 저작이나 대중성을 획득한 평론들이 쏟아져 나왔던 80년대 말, 90년대 초와 달리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관한 이렇다 할 글도 나오지 않게 된 것은 이 시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졌음을 잘 나타내는 현상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맥락 위에 있다.

① 삼칠적 연대기구운동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국보철 범투본]은 1992년 4월에 결성되었다. (결성식에는 7~8백명 참가) 23개 단체가 참가했지만 전국연합 같은 연합조직도 한 단체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실제 가입단체는 상당히 많은 수가 된다. 남북합의서 체택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배경으로 결성된 것이라든지 김명식이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에 잘 나타나듯이 그것은 통일운동과 페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구치소 앞 집회 (200명), 92년 여름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 석방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 (이것을 민가협이 이어받고 지금도 해마다 하고 있다), 남북합의서 발효 1주년을 기한 1,000인 선언 조직 등의 활동은 꽤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의장이었던 김낙중이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연루되고 압수수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집행위원장과 실무자가 항시 독립된 근거지에 상근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었고 그 당시 분위기에도 양심적 중간층까지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구성원 궁금증의 물음답은 다음에 나온 표를

- '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모임'은 1994년 6월의 노동자대탄압과 7월의 소위 '조문파동'에 뒤이은 '신공안정국' 과정에서 피해 입은 14개 단체가 모여 1994년 10월에 결성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공대위'라는 형태의 운동방식에 대한 회의가 널리 퍼져 있어 예를 들어 민가협 같은 중요한 단체는 참가하지 않았다. 참가 단체들이 이 '공동대책모임'을 1995년 2월까지의 한시적 공동기구로 하는 데 동의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계 지도적 인사 1000명 명의로 된 선언, 탑골공원 집회 (약 900명) 등의 활동이 있었다.

-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생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민운탄 대책위]는 1995년 11월 말에 19개 단체에 의해 한시적 조직으로서 결성되었으며 노동소위, 빈민소위 그리고 국보법철폐소위를 가지고 있다. (대표 백기완, 강희남) 범민련사건, 노운협사건, 이덕인씨사건 등이 결성의 배경이므로 이 역시 탄압에 대한 대응이라는 형태로 조직되었다. 국보법철폐소위의 활동은 지난 7,8월에 약 1주일의 캠페인 기간을 정하고 가진 심포지움, 거리선전, 집회 (약 200명) 등이 있다.

노동운동파의 연대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좌파의 전선조직이라는 외부인식 때문에 광범위한 단체들과의 연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민가협의 활동 및 국가보안법 국체심포지움

-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민가협]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실천해온 탑골공원 앞 목요집회가 150회를 넘어섰으며 해마다 여름에 명동성당에서 하는 농성과 '감옥체험'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 참신한 운동방식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 양심수라는 주제의 성격상 일반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많은 문제점이 장기수, 양심수문제의 그늘에 가리워져 충분히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때 열렸던 국가보안법 심포지움의 후속 조치로서, 그리고 해방·분단 50주년 기념행사로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17개 인권관련단체에 의하여 기획되었다. 해외에서 40여명의 쟁쟁한 인권운동가와 학자들이 참석하는 등 한국사상 최대의 국제인권회의였다.

이 대규모 심포지움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주는 잠재적 가능성은 크다. 특히 이제까지 국내에서 가장 취약했던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국제 전략을 모색하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환경을 일정하게 조성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제전략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핵심단위의 부재 및 외국어실력과 국제감각을 갖춘 혁신적인 활동가의 빈곤 때문에 안타깝게도 심포지움의 성과를 구체적인 국제사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반성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평범위한 연대와 구심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일반국민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그러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 인식이 없었다.
-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대한 과거의 평가와 반성들은 대체로 위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적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이 올바르고 현실적인 폐지전략·전술의 창조로 이어질만큼 적극적이고 친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발제자는 나름의 시각으로 위 4가지 비판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은 통일운동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으나 그것 자체가 국보철운동이 한결같이 내세워야 할 주장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장기수·양심수문제를 국보철운동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손쉽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견지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듈다.

- 평적인 탄압국면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국보철운동은 대중적 지지 보다도 오히려 고립을 초래한 측면이 많았다. 이것은 탄압국면에서 국보철을 주장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며 비탄압국면에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상설적인 단위의 국보철운동에 더 많은 기대와 힘을 집중시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전술의 상투성을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토론회·심포지움 따위도 “약방의 감초화”되고 있다. 기존의 반국가보안법이론 수준을 한단계 높인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가 없는 이상 토론회·심포지움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운동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국보철 전술만을 하루에 24시간 고민하는 단위가 있어야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이 나올 것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과 개정 주장을 하는 세력 간의 협력과 공동투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로 따로 운동을 하거나 ‘개폐 공대위’라는 형태로 억지로 통합시켜버릴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 기존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초조한 활동가들만의 운동이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세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첫째로 역량있는 연구자와 전문지식인들을 폐지운동의 전략생산단위로 영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고, 둘째로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고, 셋째로 평범위한 시민·대중과 함께 하려는 고민이 결여됐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나 한편 활동가들의 ‘자기만족적인’ 자만심에도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수준이 낮보상태에 있으며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층의 노력이 없었다. 예를 들어 여러나라의 국가안보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같은 것은 우리나라 형법학자간의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 (따라서 학계쪽으로부터 국가보안법문제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평론, 엣세이, 선전물 등으로 파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제적 운동전략이 없었다. 국제적 노력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나 그 소속 단체인 민변의 일부 변호사에 한정되어왔으며 그것은 그 자체로서 귀중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적어도 아무런 장기적 전략이나 체계적 운동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5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노력에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관한 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의 분담금은 사실상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성격의 것이었고 언제까지나 일부 뜻있는 의사나 변호사에게 의존하고 있을 수도 없다.

3. 새로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향하여 -기본구상

과거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대한 반성을 딛고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철폐운동을 그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물론 ‘과거청산운동’과의 역량 배치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발제자는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많은 힘을 신는 것은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에 가깝다. 따라서 아래에 개진하는 구상 모두가 당장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전술차원의 제안은 이 학술심포지움 자리에서는 보안상 생략한다.)

① 국가보안법문제에는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가지고 ‘인권’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인권’은 정치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소리 높이 외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입지를 보장해준다. 또한 ‘인권’운동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UN이라는 장에서 쉽게 먹혀든다는 이점이 있으며 일반시민·대중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으므로 특히 ‘냉전 이후’ 시대에 있어서 운동의 대중성을 달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운동과 국보철운동은 이제 막연히 혼재되어서는 안되며, 국보철운동은 자체의 독립된 전문성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

② 철폐를 주장하는 민민운동권뿐만 아니라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까지를 전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단위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 단위는 가시화되어도 좋지만 반드시 가시화될 필요는 없다. 국보철운동의 ‘두뇌’이자 분산된 운동에 질서를

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이 단위는 초일류급의 이론 및 아이디어를 갖춘 학자, 변호사, 정치인, 외국인, 운동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고 폐지운동에도 개정운동에도, 그리고 각계에도 믿음을 과 영향을 주는 인사가 바람직하다. 이들은 국보철운동의 융성기는 물론 침체기에도 정례적으로 만나야 한다.

③ 위 ②와는 별도로 역량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법에 관한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본격적 논문집 발간, 그것의 영역과 국제적 보급, 수준 높은 토론회 조직 등을 목표로 한다. 위 ②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 스타디 그룹에도 결합하면서 부단히 연구와 철폐운동의 실천을 연결시키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

④ 위 ②와는 별도로 국제감각이 있는 활동가, 변호사, 학자들로 구성되는 국가보안법의 국제적 로비 활동을 위한 국제로비단을 만들어 UN과 외국 인권 단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로비를 진행시켜야 한다. 그것이 무리라면 유능한 재외동포 몇 사람을 로비이스트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국제활동을 위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전략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위 ②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 로비단에도 결합하면서 부단히 국보철운동에 있어서의 '국내'와 '국제'를 연결시키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 외국 (미국이 바람직하다)에 재외동포가 책임을 맡는 상설 로비사무소를 두는 일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해외 교포단체와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있어서의 연대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⑤ 위 ②와는 별도로 몇 사람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상설적 국가보안법 소송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피해사례를 널리 수집하면서 끊임없이 현법소원, 재심,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등 업무를 체계적·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위 ②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 소송추진단에도 결합하면서 이 법률투쟁을 국보철운동의 전체상과 가능한 한 조화시켜기 위한 파이프 역할을 한다. 이 단위는 위 ④와의 협력 아래 국제송무도 추진해야 한다.

⑥ 국가보안법 철폐만을 자신의 유일·궁극의 사명으로 삼는 단체가 생겨야 한다. 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는 한편 꾸준히 자료를 정리하고 각종 홍보 (인터넷에 계속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일 등)를 하면서 항상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팻볼을 끄지 말아야 한다. 위 ②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기구 결성준비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공동대응기구가 결성될 경우 이 당위가 그대로 사무국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운동가로서 유능한 30대 후반~40대가 책임을 지고 상근·지도해야 한다.

⑦ 상설적 공동대응기구의 결성은 '과거청산운동'과의 역량배분문제, 탄압국면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현실적·비효율적이며 시의에 맞지도 않다. 그러나 공동대응기구의 필요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 ⑤가 결성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공동대응기구는 반드시 여러 단체와 개인의 굳은 결의 아래 한시적 활동을 전제로해서 결성되어야 한다.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한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실제로 상당한 힘을 실을 수 있고 선출되는 집행위원장이 상근할 수 있는 기간 (약 2~3개월)을 이 공동대응기구의 활동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

⑧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해서는 묘안이 없다. 운동이 기시화·구체화될 날을 위

하여 세계도처에 널려 있는 많은 재단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기금을 낼 수 있는 희한한 재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⑨ 그밖에, 전통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는 변화되는 시대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없었다. 카페라이터, 인터넷 전문가, 국내 정치권에 로비할 전문가, 대중적이고 계몽적인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작가, 만화가, 외국어에 능한 사람들 등을 장기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치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①의 입장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②와 ⑥이 우선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들어가는 말

최근 정부 및 신한국당은 1993.12.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정되어 시행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이전의 상태로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개정논의가 있는 조항은 차치하고라도 개정되지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는 법을 다시 개정하려 한다는 시도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떠나 법적 안정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공작정치의 최대의 희생자였음을 강조하면서 안기부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해 정기국회는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안기부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안기부가 정치인 제야인사 학생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밀실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거조항인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등이다.

그런데 정부 및 신한국당은 개정되지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때의 안기부법개정이유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다시 1993. 당시 안기부법 개정의 역사적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개정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이에 민변은 현행 안기부법자체의 문제점과 정부 및 신한국당이 내세우는 개정근거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 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직무범위

안기부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보안업무, 형법상의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에 대한 수사, 안기부직원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등 그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다.

물론 1993.의 법개정에 의하여 안기부는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 국가보안법증 제7조 제10조에 대한 수사권 등이 배제되어 그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지만 대공과 대정부전복에 관한 정보수집에 있어서 '대공'과 '대정부전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안기부가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에 안기부가 개입, 간섭할 수 있고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안기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은 안기부직원의 비리와 수사를 은폐,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나. 안기부의 수사권남용

안기부는 조직 구성 활동내용 등이 일체 비밀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접근 통제하기 어렵고 지방경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지 않고 안기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특정인에 대한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 정보기능의 독점과 권력의 집중

안기부는 보안업무와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이 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는 비밀의 개념이 막연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국가기관의 거의 모든 업무내용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안기부가 이에 대한 보안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은 곧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고 비밀의 공개금지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안기부는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모든 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통신내용을 도청 감시하여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

안기부장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을 통하여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안기부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주고 있다.

라. 조직의 비대화와 비공개

안기부의 조직 직원은 안기부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되어 있고 안기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파견요청을 통하여 타국가기관의 공무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소재지 및 정원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안기부는 그 조직과 인원을 권력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타국가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통하여 타국가기관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예산회계법상 재경원의 안기부에 대한 세출

예산감액권이 제한되어 있고 안기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항을 국가안전기획부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등 예산회계에 있어서도 그 비밀성이 보장되어 있어 안기부의 예산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1993.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안기부가 과거와는 달리 국회정보위원회에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안기부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마. 외부기관의 감사와 통제제한

안기부는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을 제한하고 있고 안기부장은 감사원의 감사에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국회정보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 안기부에 대한 감사원 국회 등의 감시가 불충분하다.

3. 안기부법개정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정부와 신한국당의 개정주장의 근거

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에 발생한 간수교수 간첩 사건, 한총련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안기부의 대공수사역량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안기부는 간수교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 제한으로 고정간첩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총련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기부는 무제한적인 변호인 접견허용이 간수와 같은 고정간첩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안기부법상 직권남용죄 규정으로 인하여 안기부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대공수사에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와 신한국당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993년 안기부법 개정 당시 안기부의 수사권이 제한되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하고, 안기부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금지규정 및 직권남용죄처벌 조항들을 삭제해야 하며 소위 간첩 사건에 있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개정주장에 대한 반박

1) 상황론

1993. 현행 안기부법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이유에 변화가 없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간수교수 간첩사건, 한총련 사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서 안기부법을 개정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93. 안기부법이 개정될 당시와 지금의 상황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첫째 1993. 문민정부의 출범 초기에, 안기부는 정치공작의 선봉에서 무수한 형태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국가' 안전기획부로서 보다는 '정권' 안전기획부로서의 역할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아래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자신이 공작정치의 최대의

회생자임을 자임하면서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안기부법은 여야의 합의 하에 안기부의 수사권 중 극히 일부를 제한하고 안기부원들의 직권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안기부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정치공작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안기부법이 개정된 지 불과 3년 만에 그 모든 것들이 검증되었는가? 3년이라는 시간은 제도의 허실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더우기 신한국당은 안기부법의 개정을 주장하면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체이나 인권유린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권 제한과 직권남용금지조항 외에 달리 안기부의 정치공작 및 인권유린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안기부법 개정은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과거와 같이 계속될 것임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명약관화하다.

둘째, 개정된지 불과 3년 사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다시 안기부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우리의 안보에 큰 문제가 있고 안기부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가?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개정의 근거로 최근의 간수교수 간첩사건과 한총련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간수교수에 대한 안기부의 신문에서 밝혀졌듯이 간수교수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하여 왔다. 10년이 넘는 세월이라면 1993년 안기부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이고 그때의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상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수사권에 제한을 받지 않던 안기부가 찾지 못했던 간첩을 수사권이 제한된 안기부는 찾아낸 것이다. 요컨대 안기부의 대공수사능력은 국가보안법 소정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받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안기부가 얼마나 간첩수사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총련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총련은 전대협을 기반으로 하고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를 구성원으로 결성된 공개적인 조직인데 그 배후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전대협이 결성되었던 1987년경부터였을 것이고 그때는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소정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만약 한총련에 배후가 있고 안기부가 그 배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신한국당은 국가보안법 소정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안기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기부가 간첩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간수교수 간첩사건을 안기부 수사권 확대 필요성의 근거로 들 수는 없을 것이고 회합통신, 잠입탈출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총련 배후 수사 필요성을 안기부법 개정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수사권 확대 시 문제점

정부와 신한국당의 수사권 범위 확대 및 직권남용죄 폐지를 주장 중 수사권 범위 확대에 대한 논리는 현행 안기부법상 안기부가 대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즉 간첩을 잡기 위하여서는 간첩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그를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우선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을 시키고 안기부에서의 20일간의 혹독한 수사를 통하여 간첩임을 자백받고 증거를 수집하여야만 간첩을 잡기가 수월한데 현행 법하에서는 그러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기부는 별건구속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그러한 구속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간첩 혐의 등)를 수사하겠다는 위법적인 발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다른 중한 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동법 제7조 제10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안기부 스스로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의를 무시하겠다는 위법한 발상으로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반인권적 개정방향이다.

나) 안기부는 마치 국가보안법 제7조 10조 위반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나 이는 간수사건에 비추어 보아 설득력이 없고 수사편의를 위한 수사권 범위 확대나 안기부의 권한강화가 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동법 제7조 위반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의자의 분포도 대부분 학생 노동자 재야운동가 등이다. 그렇다면 동법 제7조는 간첩 혐의 등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적용되어 온 예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안기부가 동법 제7조 위반죄까지 수사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증거가 부족하여 간첩 혐의로 구속하지는 못하고 제7조 위반사건으로 구속된 자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예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박총련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죄로 영장이 발부되어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는 동법 제7조 위반죄에 국한된 예에서 보듯이 안기부가 동법 제7조 위반사건에까지 수사권을 가질 경우 인권침해를 둘러싼 시비로 인한 폐해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은 안기부의 정치인 재야단체 학원 등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기부로부터 박탈되었는데 현재 개정 당시의 상황이 변하였다는 점이 없고 불법적인

사찰에 대한 제도적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안기부에 동법제7조의 수사권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안기부의 사찰대상이 되어 엄청난 인권침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마) 안기부가 동법제7조의 수사권을 가질 경우 안기부의 본래의 주요한 기능인 정보업무는 수사업무에 밀려 그 기능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정보업무보다 수사업무가 선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안기부에 국가보안법의 모든 죄에 대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안기부가 정보기관으로서 보다는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됨에 따른 안기부위상이 왜곡될 수 있다.

3) 변호인접견권제한에 대하여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개정 주장의 골자 중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자는 내용도 있다. 이는 1993. 안기부법 개정전에도 없던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으로서 신한국당은 그 이유로 간수교수 간첩 사건과 같은 간첩수사에 있어서 변호인 접견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도 변호인의 접견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신한국당이 변호인의 접견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내용의 안기부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험적인 발상이다.

4) 안기부직원의 사기저하에 대하여

안기부직원들의 사기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수사권축소 및 직권남용금지, 처벌조항 신설 이후 안기부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대공수사력의 약화를 가지고 왔으므로 다시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직권남용금지 및 처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기부의 사기를 제고하고 대공수사력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그를 조장할 수 있는 법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또한 안기부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반드시 안기부의 수사권축소와 직권남용금지조항 때문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대공수사력강화를 위한 안기부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안기부법의 개정이 아닌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안기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

199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안기부의 인권침해 사례는 크게 일본관련 인사들에 대한 간첩조작사건과 정치인 학생 노동운동가 재야인사에 대한 사찰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무시 가혹한 고문(폭행등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고문이 주종을 이룸) 등이다. 그후는 일본관련인사들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은 사라졌고 대부분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사람 북한과 연계된 남한내 인사들에 대한 구속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조직시비가 있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 변호인접견권침해

안기부는 과거에는 영장도 없이 피의자를 불법체포 감금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적법절차에 관한 시비는 상당한 정도 줄어 들었으나 변호인접견권 침해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간수사건에서 안기부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단지 간수가 고정간첩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변호인이 안기부장과 담당수사관을 안기부법상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으며 1995년의 박충렬 김태년사건의 경우에도 안기부는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등 여전히 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접견권을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

나) 가혹행위

안기부는 20일간의 구속수사기간동안 피의자에게 잠안재우기 폭행 폭언 등의 고문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종전의 안기부의 고문은 피의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주종이라면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기 보다(물론 아직도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한다)는 잠안재우기가 가혹행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총열은 1심에서 공소사실 모두가 무죄선고되었다.

1993. 김삼석은 1993.9.8. 안기부수사관에 의하여 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연행되었다. 김삼석은 안기부에 연행된 후에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북한에 갔다온 사실을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 폭행 협박 회유 성기 를 만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한편 김삼석의 여동생인 김은주는 1993.9.8. 안기부의 프락치로 보이는 백홍룡(일명 베인오)의 부탁으로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나 물건을 받고 100미터정도 걸어 오다가 안기부수사관에 의하여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된 후 안기부 지하실에서 잠안재우기고문 성회통 등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안기부가 프락치인 백홍룡을 이용하여 함정수사를 통하여 김삼석 김은주 남매를 간첩으로 조작하려 한 사건으로 현재 백홍룡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그외에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도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법정에서 이를 폭로하는 등 안기부는 끊임없이 가혹행위시비에 휘말려 왔다.

다) 유치장소의 문제

최근의 박충렬 김태년사건에서 동인들은 안기부에서 20일이상동안 구속조사를 받았으나 간첩과의 회합통신혐의로는 기소되지 아니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 등 위반혐의로만 기소되었고 그들은 1995.11.15. 안기부수사관에 의하여 연행된 후에 1995.12.6.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하루 평균 2시간내지 3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여러명의 수사관이 동시에 폭해를 하거나 엎드려 뻗쳐자세 엉거주춤자세 깜깜한 밤에 야산에서 웃옷을 벗기고 한참동안 서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당하였다. 그후 박

의 인권보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안기부는 법원의 결정으로 수사기간동안 피의자에 대한 안기부에서의 유치가 불법이라는 점이 명백하여졌음에도 아직도 그러한 판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

3. 결론

수사권제한과 국회정보위원회의 통제,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의 신설등으로 요약되는 1994.1. 시행된 현행 안기법에 의하여 안기부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과 다른 국가기관위에 군림하면서 저질렀던 술한 인권유린과 정보, 공작정치등은 상당부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안기법도 독소조항이 상당한 정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안기부법자체의 문제점은 남아 있으며 정치적인 혼란이나 정권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최근에 안기부는 예비군교육장에서 안기부가 제작한 비디오테잎을 통하여 한총련사건 영장담당판사를 좌의 종조세력으로 묘사하는등 아직도 안기부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권에 대한 침해행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기부법의 개정논의가 제기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정논의를 통하여 그 동안 문제된 안기부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안기부로 하여금 대외정보수집에만 전념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안기부를 제자리에 돌려 놓는 길이고 안기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다.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보고

가. 경과보고

8. 29 (목) [12.12와 5·18 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개최 (민교협, 민변, 5·18국민 위원회 공동 주최)
이 자리에서 향후 5·18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을 제안함
9. 6 (금) 민변에서 '향후 5·18사업의 방향에 관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제안함
9. 17 (화) 제1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1심재판 평가와 항소심 대응방안 논의
-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 필요성 공유
9. 23 (월) 제2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전 노재판 이후의 과거청산 : 과제 원칙 전략' 주제발표
- 향후 5·18사업 대응체계의 구성 및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토론
- 항소심 재판에 대한 성명서 발표하기로 결정
10. 6 (일)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성명서 발표
(제 시민·사회단체 연명)
10. 7 (월) 제3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과거청산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할 필요성 확인
- 향후 대응체계 논의
- 한국교회인권센터에서 '정의실현·화해·희망을 향한 국민위원회' 제안
10. 28 (월) 제4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5·18과 과거청산을 위한 기획안 작성팀에 서 제안한 제안문 확인
- 5·18 재판을 과거청산 작업으로 발전시킨다.
· 작업단위는 기존의 5·18국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하여 진행한다.
· 단체참여를 가능케 하며, 명칭도 변경한다.
· 과거청산작업을 위한 실무단위를 구성한다.
- 명칭, 구성취지, 구체적 사업내용, 조직구성, 운영방식, 규약안, 예산안 등을 검토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기로 함.
11. 7 (목) 제5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과거청산국민위(가칭) 참여단체, 예산안 등 논의
- '5·18 1심재판에 대한 실체법적 평가(서울 대 한인섭 교수 발제)' 주제토론
11. 14 (목) 제6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국민위 재구성작업에 따른 업무분담 결정
- 사무국 구성에 관한 원칙 결정
- 사업안 및 진행방식 논의
11. 15 (금)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거부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제 시민·사회단체 연명)
11. 21 (목) 제7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조직명칭, 사업안, 참여대상, 사무국 구성 등 논의
11. 27 (수) 5·18국민위원회 공동대표 집행위원 연석회의 개최
- 5·18국민위원회 청산과 과거청산국민위원회(가칭) 재구성안 확정

11. 28 (목) 제8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사무국 구성 확정
- 조직명칭, 사업안, 국민위 운영방안 등 논의

12. 4 (목) 제9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조직명칭을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회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약칭 과거 청산국민위)'로 확정

- 과거청산국민위 참여단체별 국민위원 수 심명 이상 추천키로 함
- 조직구성(안)

· 총회 : 최고의결기관으로 각 참여단체와 국민위원회로 구성

· 공동대표단 : 각 단체 대표로 구성
· 집행위원회 : 각 단체 책임자급 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

· 사무국 : 사무국장, 상근실무간사와 각 단체의 실무자로 구성

12. 12 (목) 제10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사업안과 조직운영방안 확정
- 사무국장 확정
- 조직구성 확정

12. 16 (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회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을 위한 공동 대표자 회의 및 발족선언식, 기자회견

나. 규약

이 위원회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 회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약칭 과거청산 국민위)라 한다.

제1조(목적)

이 위원회는 군사독재기간 동안 일어난 5·18을 비롯한 인권유린사태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왜곡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정의와 희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이 위원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공동 대표단의 의결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위원회는 인권침해 진상규명,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추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요구운동, 과거의 부정적인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폐 운동 등 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한다.

제5조(국민위원회와 총회)

(1) 이 위원회는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와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2) 공동대표단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공동대표)

(1) 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10명부터 20명 사이의 공동대표를 둔다.

(2)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공동대표들은 공동대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제7조(고문)

이 위원회의 사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단의 의결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

(1) 본 위원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은 이 위원회에 참여한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 공동대표단의 의결로 정한다.

(3)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4)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단이 이를 임명한다.

제9조(사무국)

(1)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명을 둔다.

(3) 사무국장과 간사는 이 위원회에 참여한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 간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되 해당업무의 분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사무국의 직제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의 규정으로 정하되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각종 위원회)

이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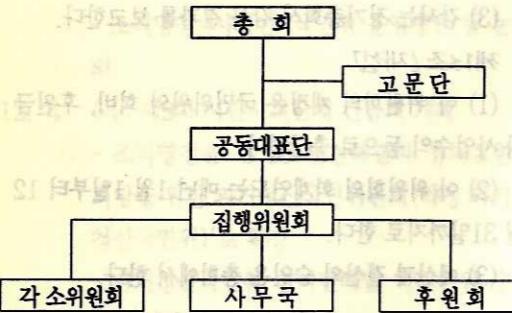
제11조(후원회)

이 위원회의 사업과 재정의 지원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감사)

(1) 이 위원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 조직 구성 ◆



다. 발족선언문

오늘 우리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학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월 26일에는 1심 판결이 이루어져 전두환 등 16명 피고인들에게 사형과 징역을 비롯해 무죄에 이르는 선고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1979년 12.12로부터 시작하여 13년 간이나 살인 학살 등 온갖 종류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였고 온 나라를 부정과 부폐의 옮기미에 쏘워 송두리째 노략질 했다.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암울한 독재와 부정과 불의에 찌들었던 오욕의 한 시대를 청산한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안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몇년 동안 이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영웅적인 싸움을 전개해 왔었다.

그러나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의 요구는 올바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반인륜적인 범죄로 인한 참혹한 인권 피해의 실상도 거의 규명되지 않았다. 5.18 재판의 핵심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인권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를 당한 회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은 전혀 구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한편에서는 터무니없는 사면설까지 유포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우리의 소임은 피고인 몇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 5.18학살이라는 대표적인 인권유린 범죄를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지난날 독재 정권들이 저지른 다른 모든 인권유린 범죄 또한 날낱이 규명하여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심판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 역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때인 것이다.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하의 우리 현대사는 5.18시민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유린 사태들이 자행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살인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자들은 온갖 특권을 향유하였고 수천억 치부를 누렸으며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 학살되거나 처형당한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십년 육살이를 한 사람들,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감옥에 갇히고 생업을 박탈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직도 원한 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한편으로 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회복과 배상을 추진하는 일이다.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권협약을 통해 법적인 공소시효를 초월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소시효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온갖 박해를 당한 채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 그들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은 최종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다시는 그러한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인권피해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그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회생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정당한 배상은 우리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나아가 과거청산을 통한 정의실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희망찬 진보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진정한 과거청산 작업 없이는 결코 올바른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성취하고 21세기를 희망찬 새로운 민족사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현세기의 남은 과제를 청산해야 한다. 이 작업은 피해 당사자들과 몇몇 민간 단체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이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야만 가능하며, 전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이 땅의 독재자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현장질서를 유린하는 등 공지의 명백한 범죄를 자행할 때, 그들을 응징하기보다는 오히려 추종하면서 친양했던 어처구니없는 시대를 살아야 했다. 이제 그런 불행했던 과거를 빠져나가 반성하면서 과거 독재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모든 불의를 철저히 파헤치고 이를 바탕으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왜곡된 과거의 유산과 잔재들을 청산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화합과 희망'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라. 주요 사업

1. 사업의 기조

사업안은 국민위원회가 발족선언식을 가지고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이 구성된 후 확정할 예정이며 그 후에도 실제 발족을 할 때까지는 발족을 준비하며 내실을 다지는 사업과 해당 시기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사업을 위주로 할 것이다.

과거청산 작업이라는 크고 장기적인 목표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소박한 희망과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

내년에 있을 예정인 6.10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등 전국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제반 사업과 혼선을 주거나 관심을 분산하는 방향의 사업은 철저히 이를 지양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과거청산은 국민과 함께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모두 관련되는 만큼 국가기관에 요구할 사업을 정하여 이를 실제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여 나갈 것이다.

2. 예정 사업

- 가. 5.18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모니터링, 재판평가 자료집 발간 등
- 나. 이번 공소에서 제외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운동

다. 5.18 학술제

- 라. 사면반대운동
- 마. 피해자 증언의 장과 피해신고센터
- 바.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운동
- (5·6공 피해자 배상 입법운동과 집단 소송)
- 사. 5·6공 수혜자 서훈박탈 운동
- 아. 민관합동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동

자. 대선공약에 과거청산 작업 반영하기
차. 과거청산 관련 국제연대
등의 사업을 위 기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마. 과거청산 국민위 참여단체 소개(가나다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787-2(백호빌딩 4층)
(☎ 921-4090 팩스 921-4094)

상임의장 : 이창복 선생
91년 12월 1일 창립하였다. 전국연합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과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 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의 투쟁을 이어받은 연합운동체로 민주노총, 전농 등 부문단체와 지역연합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자주, 민주, 통일 운동 전 분야에서 대중투쟁의 구심으로 활약해 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고영남 교수 사무실 (☎ 740-4590 팩스 740-4183)

상임공동대표 : 김민례 교수
민주법연은 진보적 법률운동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표방하며 1989년 1월 5일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였다. 그간 「민주법학」을 정기적으로(반년간) 발간했고(현재 통권 제11호), 지배적인 관료·수입 법학에 대항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학술제, 강연활동과 민주주의, 통일, 인권보장들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명지빌딩 4층) (☎ 522-7284
팩스 522-7285)

회장 :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1988년 5월 창립된 이래로 88년 사당동 강제철거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법률구조활동, 국제연대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법 등 반민주악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악법 개폐를 위한 여론형성과 우리사회의 인권신장, 민주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민변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동 1632-2(2층) (☎ 888-3683 팩스 872-7588)
회장 : 김상곤 교수

민교협은 87년 7월에 대학의 자율과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를 목표로 창립된 교수들의 모임이다.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민주화 관련 연구활동과 각종 정책강좌, 공청회, 성명발표, 5·18관련 진상 규명 활동 등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민가협)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763-3683 팩스 745-5604)
의장 : 정양업 선생

민가협은 85년 12월 12일 창립되었고, 구속학생학부모 협의회, 장기수기족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등의 협의체로 구성되었다. 그간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철폐, 고문 추방 등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일해 왔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기수 영치금보내기, 출소 장기수 후원, 양심수 조사·통계·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월혁명연구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동 1632-2(2층) (☎ 888-3682 팩스 872-7588)

소장 : 조영건 교수
사월혁명연구소는 1960년 4월혁명 이념의 올바른 정립과 그 구현방향의 연구와 실천을 목적으로하여 88년 6월

18일에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4월혁명정신 계승사업, 연구와 자료수집, 학술토론회, 연구발표회 등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승가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38-3 (☎ 725-4277 팩스 725-4275)
공동의장 : 지선스님, 청화스님

승가회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정의로운 세계인 정토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적인 노력이 본래 들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받아들여 불교내 제반모순과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개인에게는 깨달음을 이 땅에는 정토세계를 구현시키는 것을 구 목적으로 하며 92년 10월 1일 창립하였다. 한국불교의 개혁과 중흥,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 (☎ 764-1684 팩스 743-2835)

의장 : 박정기 선생
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유가족들이 "유가족의 단결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세상의 건설"을 목표로 결성한 단체이다. 86년 8월 12일 창립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 후신으로 각종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다.

참여민주시민연대(참여연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기원빌딩 4층) (☎ 796-8364
팩스 793-4745)

공동대표 : 김중배 선생, 김창국 변호사, 오재식 원장
참여연대는 94년 9월 10일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로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그동안 부패방지법 추진, 사법개혁과 감시, 국회의정 감시 등을 해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층 (☎ 777-0643 팩스 775-6267)

위원장 :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바탕으로 1988년 창립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인권상담소 운영, 조작간첩 진상규명, 양심수 석방과 후원 활동, 국내외 인권단체와 연대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기독교회관 706호) (☎ 744-3717 팩스 766-5528)

이사장 : 박형규 목사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96년 6월 7일 창립되었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신앙에 입각하여 과거 독재정권시대의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배상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며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하고 예방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8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9-5 (☎ 743-5872 팩스 743-6618)

이달의
민변
1 / 2월

합본호

이사장 : 구종서 교수
민예총은 88년 12월 23일에 민족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민중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이후 지역문화예술 창작과 지원활동, 남북문화교류, 민족예술 정책생산과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참관 단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시제단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 (☎ 3672-0251 팩스 3672-0255)

공동대표 : 문규현 신부, 장용주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우리 사회의 인간화와 복음화, 사회정의 실현을 이룩하고자 1974년에 만들어졌다. 매월 전국순회 통일염원 미사를 지내고 있으며, 사제들을 위한 <빛두레 주보>를 매주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교육사업으로 <빛두레 성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가 있다.

선거비용공개실사 정보공개청구서

언론위원회, 공선협

정보 공개 청구서

- 청구인 1.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서울 중구 소공동 117 (전화 : 747-9898)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손봉호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대표자 회장 최영도
3. 오재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0-3
(전화: 373-7005)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표시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중 지역구 당선자들(명단별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2조에 의하여 귀 위원회에 제출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위 법 제127조 제2항), 수입과 지출명세서(위 법 제129조 제1항),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위 법 제130조) 등 선거비용에 관한 관련 자료 일체.
- 귀 위원회가 제1항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금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 및 그들로부터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 일체.
- 귀 위원회가 위 법 제134조 제3항에 의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와 관련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 및 그에 따른 증거자료 등 일체.

공개의 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청구이유

1.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은 온 국민의 여망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은 심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귀 위원회의 선거비용실사를 통하여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2. 그러나 귀 위원회는 선거비용 실사결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그 결과의 진위 및 각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1996. 9. 6. 문서번호 '96-공-86'호를 통해 귀 위원회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실사결과와 관련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1996. 10. 26. 다시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1996. 11. 5.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1996. 9. 14. 귀 위원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15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비용 실사자료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1996. 10. 2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2조, 제133조 소정의 열람 및 사본교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3. 그러나 선거비용실사에 관한 자료는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이 실정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법성, 도덕성, 청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마땅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란 있을 수 없으며 가사 선거비용실사자료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갖는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선거과정의 공정성 및 후보자들의 도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들이 마땅히 수인하여야 할 범위내의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귀 위원회의 거부처분은 부당합니다.

한편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2조, 제133조에 규정된 서류 이외에도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와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 선거비용 실사결과에 관련된 서류 일체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귀 위원회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없이 이 공개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귀 위원회가 위 제132조, 제133조 소정의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하여 공개를 거부한 정보들은 위 법에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위원회의 거부처분은 부당하고,

또 위 법 제133조가 열람인의 범위를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 청구인은 열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조에 규정된 기간중에도 동법 제132조, 제133조 소정의 서류를 열람할 수 없었으므로, 열람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한 귀 위원회의 거부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합니다.

4.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정치의 실현과 투명한 행정의 보장을 위한 전제가 되는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국가기밀 등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바른 선거문화 실현을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45개 시민단체, 55개 지역단체가 연대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또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청구인 오재관은 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운동과정의 실상을 파악, 검토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또 선거관련 법제의 입법청원 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바, 귀 위원회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첨부: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당선자 명단 1부. 끝.

1996. 12. .

- 청구인 1.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손봉호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자 회장 최영도
3. 오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당선자 명단

〈서울〉 이명박, 박성범, 서정화, 이세기, 김학원, 김상우, 추미애, 노승우, 김영구, 이상수, 김충일, 유재건, 강성재, 김원길, 조순형, 김근태, 설훈, 백남치, 임채정, 손세일, 이재오, 김상현, 장재식, 박명환, 박주천, 박병진, 김영배, 신기남, 이신범, 정한용, 이신행, 이우재, 김명섭, 김민석, 서청원, 유용태, 이상현, 이해찬, 최병렬, 김덕룡, 서상복, 홍사덕, 홍준표, 맹규규, 김병태, 이부영, 김중위

〈부산〉

정의화, 홍인길, 김형오, 정제문, 김정수, 박관용, 강경식, 이상희, 김무성, 정형근, 한이현, 김운환, 김기재, 서석재, 박종웅, 김진재, 김도언, 최형우, 유흥수, 권칠현, 신상우

〈대구〉

박준규, 김복동, 서훈, 배승홍, 강재섭, 이정무, 이의익, 안택수, 박철언, 박구일, 박종근, 이해봉, 김석원,

〈인천〉

서정화, 심정구, 이강희, 서한샘, 이윤성, 이원복, 조진형, 이재명, 이기문, 이경재, 조철구

〈광주〉

신기하, 정동체, 임복진, 박광태, 이길재, 조홍규

〈대전〉

김칠환, 이양희, 강창희, 이원범, 이재선, 조영재, 이인구

〈경기〉

이병희, 김인영, 남평우, 이윤수, 조성준, 오세웅, 홍문종, 권수창, 최희준, 이석현, 안동선, 이사철, 김문수, 최선영, 남궁진, 손학규, 원유철, 허남훈, 목요상, 김영환, 천정배, 이국현, 이택석, 안상수, 전용원, 이성호, 박신원, 제정구, 유선희, 정영훈, 이규택, 이재창, 이한동, 김길환, 황규선, 이웅희, 이해구, 박종우

〈강원〉

한승수, 류종수, 함종한, 김영진, 황학수, 최육철, 최연희, 박우병, 송훈석, 장을병, 이응선, 김기수, 이용삼

〈충북〉

구천서, 오용운, 김선길, 김영준, 신경식, 어준선, 정우택, 김종호

〈충남〉

정일영, 함석재, 정석모, 김용환, 이상만, 변웅전, 김범명, 김고성, 김종필, 이궁규, 이완구, 조종석, 김현욱

〈전북〉

장영달, 정동영, 채영석, 강현욱, 최재승, 이협, 윤철상, 조찬형, 장성원, 김태식, 정세균, 박정훈, 정균환, 김진배

〈전남〉

김홍일, 한화갑, 김충조, 김경재, 조순승, 정호선, 김성곤, 김명규, 국창근, 양성철, 박상천, 박찬주, 김옥두, 김영진, 김봉호, 배종무, 김인곤

〈경북〉

허화평, 이상득, 김일윤, 임진출, 임인배, 권오을, 권정달, 박세직, 김윤환, 박시균, 박현기, 이상배, 황명태, 김종학, 주진우, 장영철, 김화남, 김찬우, 김광원

〈경남〉

김종하, 황낙주, 김태호, 차수명, 이규정, 정몽준, 권기술, 김호일, 강삼재, 김재천, 하순봉, 허대범, 김동욱, 황성균, 김영일, 김용갑, 김기춘, 윤한도, 노기태, 나오연, 박희태, 권의현, 이강두

〈제주〉

현경대, 양정규, 변정일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1.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전화:747-9898)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손봉호

2. 오재관

서울시

피청구인 검찰총장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99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 제3항에 의거 대검찰청 및 예하 지방검찰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21명(명단별첨)과 선거사무관계자 중 귀청 및 예하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분한 국회의원 및 선거사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기록 일체.

(1996.8.23.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참조)

정보의 사용목적

청구인은 바른 선거문화 실현을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45개 시민단체, 55개 지역단체가 연대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위 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국회의원 21명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검찰의 처분내용 및 그 사유를 파악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선거관련 법제의 개정정원 등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하는데 공하고자 함.

공개의 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또 청구는 목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록은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직업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성명(대표자) 손봉호 주민등록번호 380818-1011821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내용 제15대 총선 실사자료

사용 목적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정의 실상을 파악. 검토함으로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1996년 11월 20일

(접수기관)

(인)

청구인 귀하

한승수, 윤성수, 김충현, 김경진, 박학수, 최석경, 최귀한, 박우근, 주준기, 김용호, 이우현, 김기수, 이광식

별첨 : 중앙(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명단 1부. 끝.

1996. 12.

청구인 1.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손봉호

2. 오재관

검찰총장 귀중

중앙(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명단

김윤환, 오세웅, 목요상, 황병태, 이세기, 양정규, 변정일, 조진형, 박세직, 이규택, 최옥철,
송훈석, 주진우, 이기문, 김경재, 천정배, 박구일, 박종근, 제정구, 김화남, 박인배
(총 15명)

90

이달의
민변
1 / 2
월
합본호

청구인 귀족

법령 외부동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1.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전화 : 747-9898)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손봉호

2. 오재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귀 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대응하는 각급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에 의하여 귀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당선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기록 일체.

2. 위 총선거와 관련하여 귀청 관할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중 귀청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 또는 내사하였다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분한 당선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기록 일체.

청구사유

1.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정치의 실현과 투명한 행정의 보장을 위한 전제가 되는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국가기밀 등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996. 8. 23. 선거비용실사결과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법위반혐의로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중 20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그 중 3명을 기소하였으나 나머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내용 및 불기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수사(또는 내사)기록은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덕성, 청렴성, 대표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91

자료·선거비용공개실사·정보공개청구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일반 수사기록과는 달리 선거권자인 국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에 청구인은 바른 선거문화 실현을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45개 시민단체, 55개 지역 단체가 연대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귀청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귀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국회의원 및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이와 별도로 귀청 관할 지역구에서 당선된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들 중 귀청에서 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 또는 내사한 국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귀청 소속 검사의 처분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선거관련 법제의 개정청원 등에 관한 연구, 조사를 하는데 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바, 조속히 위와 같은 정보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중앙(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명단 1부. 끝.

청구인 1.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손봉호

2. 오재관

중앙(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명단

김윤환, 오세웅, 목요상, 황병태, 이세기, 양정규, 변정일, 조진형, 박세직, 이규택, 최옥철,
송훈석, 주진우, 이기문, 김경재, 천정배, 박구일, 박종근, 제정구, 김화남, 박인배

통합방송법 제정 제안서

민변 언론위원회

I. 통합 방송법 제정의 당위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송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적 책임이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방송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방송이 국가나 특정정파 그리고 대자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안)(이하에서는 "정부의 방송법(안)"이라고 함)과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된 방송법(안)(이하에서는 "야당의 방송법(안)"이라고 함)이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의 방송법(안)은 일부 긍정적 내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송시장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송의 산업논리와 그에 따른 탈규제에 치우쳐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적책임을 구현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반하여 야당의 방송법(안)은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그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방송의 민주적 개혁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송법의 제정이야말로 정치, 경제 및 사회 제반분야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초석이며 법적, 제도적 개혁의 디딤돌이 된다는 신념에서 정부 및 야당의 방송법(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방송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제정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II. 정부의 방송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정부의 방송법(안)의 주요내용

정부(공보처)가 제출한 방송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가. 기존의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고(안 제2조)

나. 방송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두며(안 제4조)

다. 대기업과 일간 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일반방송사업, 방송채널용사업자를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의 참여를 허용하고(안 제13조)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 상호겸영 및 복수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며(안 제13조)

마. 종전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단일 방송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고(안 제40조 내지 제54조)

바. 수신자의 방송참여 조항을 신설하며(안 제57조)

사. 방송산업을 지원하고, 방송프로그램 보관소, 방송전문교육기관 및 연수원 등의 설치, 방송제작단지의 조성, 방송프로그램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안 제59조 내지 제64조)

2. 정부의 방송법(안) 중 긍정적인 내용

가. 정부의 방송법(안)이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하여 규정한 점(안 제2조 제1호)

나. 종전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단일의 방송위원회를 신설한 점(안 제40조 내지 제54조)

다. 재난방송에 대하여 규정한 점(안 제27조)

라. 수신자의 방송참여 조항을 신설한 점(안 제57조)

마. 방송으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반론보도청구권)를 강화한 점(안 제58조)

바. 방송발전의 지원을 강화한 점(안 제59조 내지 제64조)

3. 정부의 방송법(안)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가. 정부의 방송법(안)에 의하면, 공보처장관은 방송정책의 수립,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추천·허가권 및 승인권, 변경허가·재허가권, 심사권, 시정명령권, 허가취소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안 제4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20조)

그런데 공보처장관이 방송정책 뿐만 아니라 방송정책의 집행 및 방송에 대한 규제까지 관掌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방송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전세계적으로 국무위원급 중앙행정기관이 방송정책과 집행권한 그리고 규제권한까지 담당하고 있는 국가는 독재국이나 정치적 후진국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보처는 폐지되거나 정보통신부와 통합

되어야 한다. 만약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당장 공보처의 폐지 또는 통합이 어렵다면 공보처의 직무 범위를 현재의 "국내외의 홍보, 여론조사·여론 및 보도에 관한 사무"(정부조직법 제26조의 2)에서 "국내외의 홍보, 여론조사 및 방송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으로 국한하고, 그 밖의 공보처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사항은 모두 '방송위원회'의 권한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나. 방송발전정책협의회는 정부에 의한 방송통제의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안 제4조)

다. 일반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허가나 그 심사시(안 제8조, 제9조) 그로부터 사업권료를 반드시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에 있어 공공채널 또는 지역채널의 운영과 시청자단체등 방송유관기관의 활동지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에게 그 허가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전파의 회소성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자원을 특정 사업자에게 이용케 하는 경우 마땅히 그 대가를 징수하여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하찮은 모래나들도 채취권료를 받고 이용케 하는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중 하나인 전파를 일반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로서 헌법상의 경제질서조항(제120조)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라. 정부의 방송법(안)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등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상한선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안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항), 매체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한선을 100분의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마.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에 의한 방송참여를 예외없이 금지해야 하며(안 제13조 제3항)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일반방송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에의 참여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안 제13조 제4항)

바. 정부의 방송법(안)은 대기업과 일간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이 아닌 위성방송사업 및 그 채널사용사업과 종합유선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바(안 제13조 제6항), 이러한 규정은 매스미디어의 다원적 구조와 언론기관 내부의 민주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의사표현의 통로를 열어놓아 여론형성의 과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언론자유(제21조)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반하므로 상당기간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사. 특히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함되길 것이 아니라(안 제13조 제11항)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2조를 방송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

아. 방송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여 그 기간동안에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안 제17조)

자.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에 대하여 총방송시간의 2% 이상을 시청자 또는 사회단체 등에게 할애하는 내용의 방송참여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Public Access조항)

차. 방송광고공사가 독립적인 광고영업권을 갖고 광고요금의 결정권까지 갖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안 제25조 제6항),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 방송광고공사를 공익적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랩)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 및 수수료 관리는 방송위원회에서 관掌하도록 해야 한다.

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 저작권법 제6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일반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거나 존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내의 유예기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

타. 방송프로그램의 보존기간을 6월(안 제37조)에서 민법상(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인 3년으로 늘려야 하며, 수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실비로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파.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범위에 관하여

(1) 정부의 방송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안 제41조) 즉, 3부의 장의 추천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방식(안 제6조 제2항) 즉,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함으로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방송법(안)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방송위원회 위원 전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고전적인 3권분립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당정치의 발전으로 인하여 권력의 통합현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 + 여당' 대 '야당' 간의 실질적인 권리분립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단지 3부의 장의 추천으로 방송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

어 민주적 대표성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방송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있어 기관 내부의 견제 및 통제 장치의 마련이 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며 이것이 현대적 권력분립론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방송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은 단지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기초한 것일 뿐 정당정치의 발전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에 충실히 못하며, 방송의 공정책임과 방송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 방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이내를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방송위원으로 하며

(나) 방송위원은 국회가 사회단체(예컨대, 원내교섭단체, 지방의회, 시청자단체, 소비자단체, 교육기관, 법률가단체, 농어민단체, 노동자단체,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등이며 원내교섭단체나 지방의회의 추천인원을 가중할 수 있다)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책임질 만한 인격과 덕망, 학식을 갖춘 자를 선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되 그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고 상임위원간 직무의 분장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라) 방송위원의 임기는 선출권자인 국회의 의원 임기를 감안하여 4년으로 한다.

(2) 방송위원회의 권한으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국 등에 대한 허가권, 변경 허가·제허가·허가취소권, 사업권료의 결정·부과·징수·배분권,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 임면권, 수신자위원회 위원의 위촉

권, 방송수신료의 결정·배분권, 방송관련 법률안의 개폐 건의권, 편성규약에 대한 유권해석권 등을 갖는다.

(3) 정부의 방송법(안)은 외국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수입추천,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 광고 방송의 시간·횟수,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방송비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안 제22조 내지 제25조) 이는 방송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4) 방송위원회의 회의는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 를,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갖되 상임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카. 시청자의 권리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수신자위원회의 구성은(안 제56조)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방송위원회가 위촉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권한(안 제65조)도 공보처장관이 아닌 방송위원회에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 또는 등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파. 정부의 방송법(안)에 위성방송의 사업자 선정 및 채널 구성방법, 심의 등 위성방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

하. 방송위원회 및 수신자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그 회의록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

거. 편성규약 제정의무조항의 신설

(1) 일반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

하여 편성위원회가 제정한 편성규약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 및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방송환경 즉 취재, 보도, 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방송사의 편성권이 온전히 정부의 영향력에 의하여 임명되는 편성책임자의 전권에 속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은 공념불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소유구조 문제의 차원에서 방송의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방송의 편성에 대하여도 일정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2) 신설되어야 하는 편성위원회는 사용자 및 취재 또는 보도,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동수의 편성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

(3) 사용자를 대표하는 편성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성위원은 취재 또는 보도, 편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다.

(4) 편성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1. 방송보도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2. 편성위원회의 구성, 권한,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편성의 기본적인 원칙 및 세부 지침에 관한 사항

4. 편성의 기본방침에 현저히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

5. 윤리강령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
6. 편성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7. 편성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8. 편성위원회의 규정 제정 등에 관한 사항
9. 편성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편성 방향의 심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방송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성규약을 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또 비치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될 편성규약과 그 승인을 위한 편성위원회의 조직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부처조항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너.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현실적으로 방송사 내부조직의 민주화를 통하여 실현 내지 통제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방송사 노동조합의 목적사항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의 실현 및 감시' 조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야 한다.

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안 부칙 제2조 제1항)

III. 야당의 방송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야당의 방송법(안)의 주요내용

야당의 방송법(안)의 주요 골자는,

가. 기존의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안 제2조)

나. 대기업과 일간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을 위탁하는 위탁방송사업(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의 경우 제외)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탁방송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안 제7조)

다. 종전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단일의 방송위원회로 통합하고,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안)에서 공보처가 맡고 있던 직무를 모두 방송위원회의 직무로 대체하였으며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방송위원에 대한 국회추천권을 명시하고 있고(안 제25조 등)

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야당의 방송법(안)의 긍정적 내용

가. 방송법(안)이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하여 규정한 점(안 제2조)

나. 종전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단일의 방송위원회를 신설한 점(안 제18조 내지 제40조)

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거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위탁 방송사업자 등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상한선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한 점(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는 100분의 30)(안 제7조)

라. 대기업과 일간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을 위탁하는 위탁방송사업(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의 경우 제외)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탁방송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안 제7조)

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위탁방송사업자는 상호 겹영할 수 없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한 점(안 제7조)

바. 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의 추천, 승인, 취소, 방송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방송 사업자와 방송편성, 제작자 사이의 분쟁의 조정 등을 방송위원회의 직무로 함으로써, 방송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 및 방송에 대한 규제까지 관장하고 있던 공보처의 직무를 방송위원회의 직무로 대체 한 점(안 제25조)

사. 방송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강화한 점(안 제9조, 제16조)

아. 방송발전기금의 균형규정을 마련한 점(안 제34조, 제35조)

자. 재난방송에 대하여 규정한 점(안 제46조)

차.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강화한 점(안 제55조~제59조)

로 카. 정책공표에 관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안 제61조)

3. 야당의 방송법(안)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허가시 그로부터 반드시 사업권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방송에 있어 공공채널 또는 지역채널의 운영과 시청자단체 등 방송유관기관의 활동지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안 제67조에 "이 법에 의한 허가, 승인, 변경허가, 변경승인, 재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상의 수수료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수수료가 방송사업허가 등에 대한 사업권료(혹은 면허료)를 의미한다면 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율러 안 제25조 제1항 제12호의 "민영방송의 방송허가시 방송수익의 사회환원액 정금"과 사업권료 혹은 안 제67조의 수수료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중 "민영방송"의 의미와 범위등이 불투명하므로 이를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즉 공중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야당의 방송법(안)은 방송위원회를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간의 합의로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방송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의 구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다.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하여 총 방송시간의 2% 이상을 시청자 또는 사회단체 등에게 할애하는 내용의 방송참여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라. 방송프로그램의 보존기간을 1년(안 제52조)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으로 늘려야하며, 수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비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안 제57조)중 제6호는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위원의 권한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사. 방송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끝.